

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3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8월 14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발생 및 이에 대한 안정적인 자원 확보 필요에 따라, 조례에 명시된 도시개발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도시개발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(제9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, 「도시개발법」, 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평가제외

(5) 시민협력과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
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협의 사항
: 해당없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 (2023. 6. 15.~7. 5.) 결과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조형술(☎2133-8647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특별회계의 설치) ①·② (생략) ③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<u>2023</u> 년 <u>12월 31일</u> 까지로 한다.	제9조(특별회계의 설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2028</u> 년 <u>12월 31일</u> -----

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도시개발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개정안으로 비용 수반이 없음

4. 작성자

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도시정비정책팀 조형술 (2133-8647)